

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서(조치 요청서)

※ (*)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, 나머지 사항은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신고인	성명(기관·단체명)*			
	연락처 등 개인정보	전화번호* (휴대폰)		이메일*
		생년월일 (기관·법인번호)		
불법촬영물 등의 유통현황*	불법촬영물등의 유통현황* 불법촬영물등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도록 URL과 화면 캡처본을 첨부하여 주시되, URL 기재가 어려운 경우 검색어 등 해당 불법촬영물등의 위치에 대한 상세 설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)			
신고요청 사유*	<input type="checkbox"/>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<input type="checkbox"/> 불법촬영물 <input type="checkbox"/>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고,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촬영물 (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를 포함)			
※ 해당되는 사유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중복가능)	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·신체·음성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·합성 등을 한 촬영물/영상물/음성물 <input type="checkbox"/> 허위영상물 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자의 얼굴·신체·음성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·합성 등을 하고,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촬영물/영상물/음성물 (편집·합성 당시에 동의가 있었던 경우를 포함)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아동·청소년성이 분명한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* 를 표현한 촬영물/영상물 * 성교행위, 유사성교행위, 신체를 접촉·노출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, 자위행위 등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☞ 그 외 촬영물/영상물이 불법촬영물·허위영상물·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에 명백히 해당함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			

※ 신고요청 사유가 불명확한 경우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의5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5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(사업자 명) 귀하

첨부서류	☞ 「전기통신사업법」시행령 제30조의5 제1항 각 호의 기관·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실적증명서,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.
------	--

